

교육부장관 귀하
학교법인 이사회 귀중

감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2016. 03. 01 ~ 2017. 02. 28)

붙임

1.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2.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

- 감사보고서(별지9호서식)의 피감사자(입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사무국장, 학교: 재무처장, 부속병원: 경리부장 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 이사장, 대학교: 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 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갈음함

학교법인 삼일학원
협성대학교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일학원(협성대학교)의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삼일학원 (협성대학교)의 재산 상황·회계와 이사회 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 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지적사항 없음(표기)>
1. 법인 일반업무관련	지적사항없음	지적사항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3. 학교 관련	3 임대관련 보증금등 관리소홀 외 2건	지적사항없음	
계			

- 붙임 1.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협성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17년 4월 24일

학교법인 삼 일 학 원

감 사 이 원 섭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3997호)

피감사 기관장

2017년 4월 24일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 사 장 서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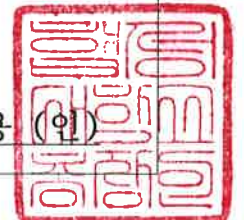


피감사 기관장

2017년 4월 24일

협성 대학교

총 장 박민용 (인)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6년 3월 1일 부터 2017년 2월 28일 까지)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서철 (직인)



협성대학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6년 3월 1일 부터 2017년 2월 28일 까지)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협성대학교></p> <p>1) 임대관련 보증금 등 관리소홀 2016년 8월 23일에 체결된 교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임대보증금보증보험증권(또는 3천만원 현금입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받지않고 있음. <u>(증권보다는 현금으로 받도록 권고)</u></p>	<p>임대관련 보증금 등 관리 소홀</p> <p>-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미비된 임대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과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지적사항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향후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조치할 계획입니다.</p>
<p><산학협력단></p> <p>1) 회계담당자의 회계관리미흡 회계처리를 외부 회계사무실에 상당부분 의존함으로 회계담당자가 결산내용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u>산단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권고.</u></p> <p>2)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과다하게 계상,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u>회계담당자 회계처리 기본교육을 권고.</u></p>	<p>회계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겸직(산학협력단, 창업보육매니저, 연구비정산, 총무, 회계)으로 회계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회계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분장할 경우 인원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산학협력단 재정운영상 인력충원은 불가능함.</p> <p>그러나 앞으로는 회계담당자의 전문교육(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시행)과 자기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계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음.</p>

피감사기관장 협성대학교 총장 박 민 용 (직인)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2016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7. 4 . 24 .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 사 : 이 원 섭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 과 장 

성 명 : 염 윤 우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협성대학교의 2016회계연도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른 협성대학교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치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된 사항 :

1. 임대관련 보증금 등 관리소홀
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자의 회계관리 미흡
3. 산학협력단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2017. 4 . 24 .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 사 : 이 원 섭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 총무처장

성 명 : 홍 기 